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644

제출연월일: 2020. 5. 29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

1. 제안이유

함월구민운동장 및 중구수영장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제3자(민간)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0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설치현황: 총 3대

○ 설치대상

시설명	설치위치	수량	판매품목	비고
함월구민운동장	휴게실	1대	음료 및 커피	
중구수영장	로비	2대	음료 및 원두커피	

○ 운영방식: 온비드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위탁운영

○ 사용수익기간: 계약일로부터 3년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자판기 설치 건의·개선 요구가 많은 함월구민 운동 장 및 중구수영장에 자동판매기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이용객 편 의 증진

3. 관련법규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0조제2항

관 련 법 규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2.11.05 조례 제 620호 「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」등 일부개정조례 (일부개정) 2015.10.05 조례 제747호 (일부개정) 2017.07.31 조례 제886호

제3장 사 업

제19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5.10.5>

- 1.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
- 2.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
- 3. 함월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
- 4. <삭제 2015.10.5>
- 5.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사업
- 6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- 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0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

- ② <u>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(이하 "구의회 "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/u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5.10.5.>

< 위치도 및 현장사진 >

□ 함월구민운동장

○ 울산 중구 성동 1길 2 함월구민운동장 휴게실



□ 중구수영장

○ 울산 중구 종가로 305 중구수영장 로비

